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

의 안 번 호	192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2005년 우리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장애인 전용 경기장 신축을 위해 제210회 도의회 의결을 얻은 충청북도 곰두리 체육관 증축사업의 부지매입 및 건물 등 시설 확충 사유 발생과

○ 다양한 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며 지역 산림환경의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하는 『생태숲』의 교육 및 체험시설로 활용할 생태관 및 관리동 등 건물을 신축하고자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

≪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증축 ≫

○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

○ 사업규모

- 부지매입 : 청주 상당 사천 623-7번지외 2필지 5,662㎡
- 다목적체육관 : 연면적 1,124㎡(지하 1층, 지상 1층)
- 구조물 설치 : 3,116㎡(인조잔디구장, 하드코트)

○ 사업기간 : 2003~2005

○ 사 업 비 : 3,300백만원(국비 150 도비 3,150)

※ 주요변경내역

- 부지매입 : ⇒ 3필지 5,662㎡
- 건물신축 : 725㎡ ⇒ 1,124㎡
- 구조물설치 : ⇒ 2종 3,116㎡
- 사 업 비 : 500백만원 ⇒ 3,300백만원

≪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 ≫

○ 위　　치 :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산 90-1번지

○ 건축규모 : 연면적 896㎡

- 전시관 : 2층　623㎡
- 관리동 :　　174㎡
- 안내실 :　　66㎡
- 산촌집 :　　33㎡

○ 사업기간 : 2004. 3～2006. 11

○ 사 업 비 : 1,271백만원(국비 635　도비 636)

※ 산골체험관광마을 조성 15개 사업중 1개 사업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　고
계	4,571,000 (도비 3,786,000)				
○ 충청북도 곰두리 체육관 증축	3,300,000 (도비 3,150,000)				
○ 생태숲 전시관 및 관리동 신축	5,208,000 (도비 2,604,000)				

4.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 첨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
○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○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공유재산관리계획서

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	당초			변경(증감)			합계		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2	290,370.20㎡ (87,836평)	26,676,000	1	5,662.00㎡ (1,712평)	1,285,000	3	296,032.20㎡ (89,548평)	27,961,000
		건물	4	20,403.15㎡ (6,171평)	17,412,026	2	2,020.00㎡ (611평)	2,686,000	6	22,423.15㎡ (6,782평)	20,098,026
		기타	1	3종	2,560,429	1	3,116.00㎡ (942평)	600,000	2	3종	3,160,429
	매입	토지	2	290,370.20㎡ (87,836평)	26,676,000	1	5,662.00㎡ (1,712평)	1,285,000	3	296,032.20㎡ (89,548평)	27,961,000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4	20,403.15㎡ (6,171평)	17,412,026	2	2,020.00㎡ (611평)	2,686,000	6	22,423.15㎡ (6,782평)	20,098,026
		기타	1	3종	2,560,429	1	1종	600,000	2	3종	3,160,429
처분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※ 기타 : 공작물(론볼링경기장 1,710.00㎡, 휠체어테니스장 1,406.00㎡)

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천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,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계	토지	1 건	5,662.00㎡ (1,712평)	1,285,000 (1,285,000)				
	건물	2 건	2,020.00㎡ (611평)	2,686,000 (1,301,000)				
	기타	1 건	3,116.00㎡ (942평)	600,000 (600,000)				
1	토지	청주 상당 사천 623-7외 2필지	5,662.00㎡ (1,712평)	1,285,000 (1,285,000)	2004	장애인체육활동 서비스 제고	이상철외5인	매 입
	건물	〃	1,124.00㎡ (340평)	1,415,000 (1,265,000)	2004 ~ 2005	〃	신 축	
	기타	〃	3,116.00㎡ (942평)	600,000 (600,000)	〃	〃	〃	
2	토지							
	건물	제천 백운 덕동 산 90-1 (생태 숲 내)	896.00㎡ (271평)	1,271,000 (636,000)	2004 ~ 2006	생태숲의 효율적 운영·관리	신 축	
	기타							
3	토지				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
※ 기 타 : 공작물(론볼링경기장 1,710.00㎡, 휠체어테니스장 1,406.00㎡)

- 추정가액내 ( )는 도비 임

관 계 법 령 발 췌

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으로 정한다. 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기부채납,무상양수,환지,무상귀속,교환,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출자,기타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처분(매각,양여,교환,무상귀속,건물의 멸실,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(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) 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로 하고,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)

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	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호 생략